

#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(舊.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)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5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## 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주소		
이*구 (57.**.28.)	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생략)	업무정지 5.5개월 (2022.09.16.~2023.02.28.)	경력 거짓신고
한*효 (68.**.19.)	충남 금산군 (이하생략)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09.16.~2023.01.31)	경력 거짓신고
이*일 (72.**.17.)	충북 제천시 (이하생략)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09.16.~2023.01.31)	경력 거짓신고
최*수 (68.**.25.)	충북 음성군 (이하생략)	업무정지 5.5개월 (2022.09.16.~2023.02.28.)	경력 거짓신고
임*식 (64.**.30.)	충북 옥천군 (이하생략)	업무정지 5.5개월 (2022.09.16.~2023.02.28.)	경력 거짓신고
차*덕 (73.**.05.)	충남 보령시 (이하생략)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09.16.~2023.01.31)	경력 거짓신고
정*규 (62.**.17.)	대전광역시 유성구 (이하생략)	업무정지 14개월 (2022.09.16.~2023.11.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
## 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제1호, 제2호 (舊.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, 제2호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(舊.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)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담당자(☎ 042-670-32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